



# 관 리 규 정

## 감사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제 정 일

2022.03.25

개 정 일

2022.11.01

1/12


개정번호

1

### [ 목 차 ]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범위]
- 제 3 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제 4 조 [직무와 권한]
- 제 5 조 [의무]
- 제 6 조 [책임]
- 제 7 조 [구성]
- 제 8 조 [위원장]
- 제 9 조 [회의]
- 제 10 조 [소집권자]
- 제 11 조 [소집절차]
- 제 12 조 [결의방법]
- 제 13 조 [부의사항]
- 제 14 조 [관계인의 출석 등]
- 제 15 조 [의사록]
- 제 16 조 [선임]
- 제 17 조 [감사인의 변경]
- 제 18 조 [감사인의 해임]
- 제 19 조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 20 조 [독립성 확보]
- 제 21 조 [감사인과의 의견교환]
- 제 22 조 [감사위원회의 지원부서]
- 제 23 조 [감사록의 작성]
- 제 24 조 [규정의 제.개정]

부 칙

	<b>관 리 규 정</b>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제 정 일	2022.03.25	
	<b>감사위원회 규정</b>	개 정 일	2022.11.01	2/12
		개정번호	1	

## 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 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 제 3 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4 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상태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b>관 리 규 정</b>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제 정 일	2022.03.25	
	<b>감사위원회 규정</b>	개 정 일	2022.11.01	3/12
		개정번호	1	

### 제 5 조 (의무)

-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조 (책임)

-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 7 조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관 리 규 정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제 정 일	2022.03.25	
	감사위원회 규정	개 정 일	2022.11.01	4/12
		개정번호	1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 제 8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9 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b>관 리 규 정</b>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제 정 일	2022.03.25	
	<b>감사위원회 규정</b>	개 정 일	2022.11.01	5/12
		개정번호	1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과 회사의 감사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0 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1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 12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

	<h1>관 리 규 정</h1>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제 정 일	2022.03.25	
	<h2>감사위원회 규정</h2>	개 정 일	2022.11.01	6/12
		개정번호	1	


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3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 소집 청구
  - (2) 감사보고서의 승인·제출
  - (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승인
  -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의 보고
  -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6) 대표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7)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및 후속조치의 결정
  - (2)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조사 및 후속조치의 결정
  - (3) 이사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결정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b>관 리 규 정</b>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7/12
		제 정 일	2022.03.25	
	<b>감사위원회 규정</b>	개 정 일	2022.11.01	
		개정번호	1	

-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1) 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사항
- (12)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13)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 제 14 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 및 감사인의 회의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 3 장 외부 감사인의 선임 등

	<b>관 리 규 정</b>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제 정 일	2022.03.25	
	<b>감사위원회 규정</b>	개 정 일	2022.11.01	8/12
		개정번호	1	

### 제 16 조 (선임)

- ① 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한다.
-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기간에 관하여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 17 조 (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 18 조 (감사인의 해임)

- ①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관 리 규 정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제 정 일	2022.03.25	
	감사위원회 규정	개 정 일	2022.11.01	9/12
		개정번호	1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결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에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 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18조에 의하여 감사인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 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 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 1 호 및 제 2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 제 20 조 (독립성 확보)

	<b>관 리 규 정</b>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제 정 일	2022.03.25	
	<b>감사위원회 규정</b>	개 정 일	2022.11.01	10/12
		개정번호	1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 제 21 조 (감사인과의 의견교환)

- ①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매 분기 1회 감사인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4 장 보칙

#### 제 22 조 (감사위원회의 지원부서)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내부회계팀의 부서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지원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2.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지원
  3. 감사보고서 검토 지원



## 관 리 규 정

문서번호

OS A 0104

페이지

제 정 일

2022.03.25

## 감사위원회 규정

개 정 일

2022.11.01

11/12

개정번호

1

4. 감사인 선정 및 평가 지원

5. 위원회 소집통지, 위원회 부의 안건 정리, 의사록 작성, 부의 안건의 사후 관리 등

6. 기타 위원회가 지시한 업무

### 제 23 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24 조 (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